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2011. 11. 3(목) 조간		
배포일시	2011. 11. 2(수) 15: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담당과장	윤성욱 (2150-4610)	담당자	김시동 서기관 (2150-4611)

제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예고기간: '11.11.3 ~ 11.23) 하였음

○ 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범부처적인 협의·조정기구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 그 동안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으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

*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생산성은 OECD국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미흡('08년: 美의 44%, 日의 62%, 제조업의 41% 수준)

○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통계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 육성 등이 시급한 과제이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추진에 애로

○ 100세 사회 도래, IT 기반 산업간 융합 등 다양한 新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

* 원격의료(복지부+ 지경부), 의료관광(복지부+ 문화부), 콘텐츠(방통위 + 지경부) 등

- 업계, 전문가 등 시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채널 구축

-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부재**

* 서비스산업 비중(%,'10년): 고용의 68.5%, 부가가치의 58.2%

-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업을 '산업'으로서 육성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금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5조~제12조)

- 동 위원회는 **재정부 장관과 민간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원활한 정책협의·조정**과 함께 **시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구축
- 동 위원회는 **장·단기 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R&D·인력양성·규제개혁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기능을 수행

② **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 유도** (안 제15, 16조)

- 기존의 제조업·과학기술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R&D 개념을 새로이 정립***
- *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R&D 성과를 정부가 인증하고** 재정·금융·판로 등 **R&D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③ **서비스산업에서 IT서비스 및 관련 기술 활용을 촉진** (안 제17조)

- IT서비스 및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e-learning(원격 교육), u-health(원격 의료) 관련기술의 개발·보급, 저작권 보호 강화 등

- ④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규정**(안 제19조~제21조)
-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창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을 지원
 - (해외진출) 해외시장 조사, 지원 기관간 협력 체계의 구축, 국제 공동 R&D 지원
 - 재정·금융 등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제조업 등과 비교해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 발굴
- ⑤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안 제22조)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
 -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단체,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 ⑥ **통계DB 구축 및 실태조사** (안 제23조)
- 서비스산업 통계DB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태 조사 근거를 규정
- ⑦ **전문 연구센터 지정** (안 제24조)
-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전문 연구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주요기능)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동향 조사와 주요 국가의 정부지원 정책 등 연구,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정부정책 과제 제시 등
- ⑧ **서비스산업 연합회 설립** (안 제25조)
- 서비스산업 업계 전체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책방향을 건의하는 새로운 채널 마련을 위해 관련법인·조합·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 설립근거를 규정

□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 그 동안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서비스분야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 100세 사회 도래, 산업간 융합 등 다양한 新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은 청년·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 청년(문화콘텐츠), 여성(보육 등 사회서비스), 퇴직전문인력(컨설팅) 등

□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20일간의 입법예고(‘11.11.23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별첨>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

2011. 11. 3

기 획 재 정 부

■ ■ 목 차 ■ ■

I . 추진배경	 1
Ⅱ. 제정안 주요 내용	 2
1.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3
2.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생산성 향상 지원	 8
3. 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11

I. 추진배경

①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생산성은 OECD국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미흡('08년: 美의 44%, 日의 62%, 제조업의 41% 수준)

- R&D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통계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 설치 등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②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한 협의·조정기구* 필요

*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

- 100세 사회 도래, IT 기반 산업간 융합 등 다양한 新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

* 원격의료(복지부+ 지경부), 의료관광(복지부+ 문화부), 콘텐츠(방통위 + 지경부) 등

- 장·단기 정책방향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강화
- 각 개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업종별·부처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관련 정책을 범부처적인 정책으로 통합·조정

③ 서비스업을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공감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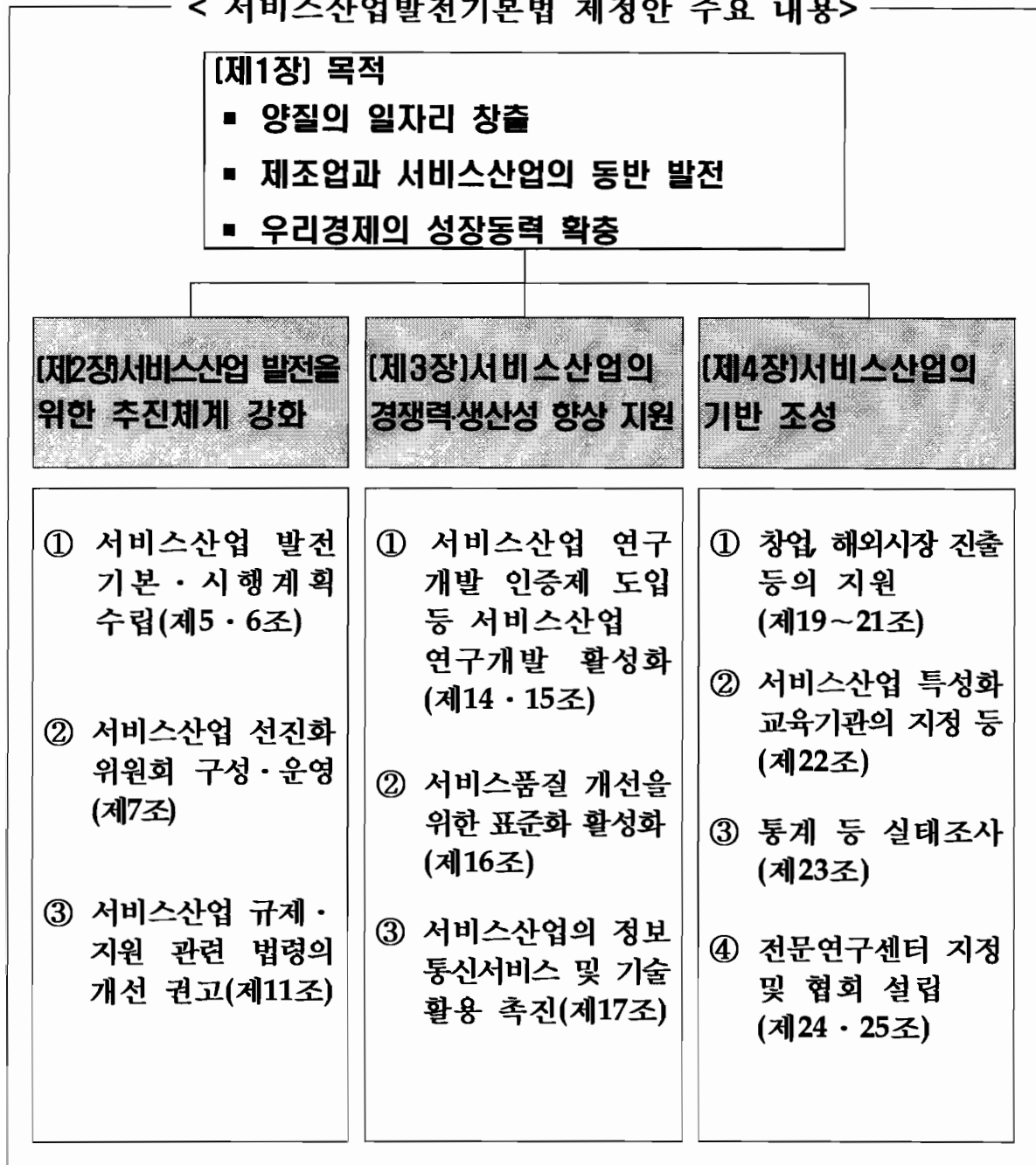
-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부재

* 서비스산업 비중(%,'10년): 고용의 68.5%, 부가가치의 58.2%

Ⅱ. 제정안 주요 내용

- ◆ (구조) 5장 28조로 구성 (1장: 총칙, 2장: 추진체계의 강화, 3장: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4장: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5장: 보칙)
- ◆ (적용범위) 표준산업 분류상 농식품업, 제조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 >



1.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제1,2장)

[1] 목적 및 적용범위 (제1·2조)

- (목적)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 (적용범위) 서비스산업의 적용범위에 대해 의료·교육 등 대표적인 업종 예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표준산업 분류상 농림수산업, 제조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적용대상으로 규정

[2]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시행계획 수립 (제5~7조)

1. 필요성

-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단기적 관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
 - 특히 100세 시대의 도래, 산업간의 융합 등 다양한 新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 강화가 중요
- * (제조업+서비스업) e-learning, 스마트폰, IPTV
(서비스업+서비스업) u-health(정보통신서비스+의료), 의료·산업관광

2. 주요 내용

□ 서비스산업 선진화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 각 부처별 소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범정부적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본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제5조)

▪ (기본계획 주요 내용) 서비스산업 발전의 목표·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규제개혁, 연구개발·투자 촉진, 인력양성, 해외 진출촉진, 타산업과의 융합촉진, 지역·중소서비스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

< 기본계획 관련 입법례 >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주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수립방법	국과위 심의를 거쳐 확정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국가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 관계부처 등은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에 제출 (제6조)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에서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제7조)

[3]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운영 (제8~11조)

1. 필요성

- 부처별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관합동의 범정부적 추진체계 필요**
 - IT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간 융합 등 다양한 **新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처간의 **협력체계 강화 필요**
 - 관련업계, 전문가 등 민간 부문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채널 마련 필요**
 - 서비스 업종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통합·조정 필요**

2. 주요내용

-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운영**
 - (기능) 서비스산업 선진화 장·단기 계획의 수립과 추진 실적 점검·평가 등(제8조)
 -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5년)·시행계획(1년)의 심의·의결과 추진실적 평가
 -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다수 부처 관련사항의 협의·조정
 -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제도 개선, 연구개발, 재정·금융 지원, 조직·인력양성 등 주요 정책 심의·의결
 - 서비스산업 관계 법령의 제·개정시 의견 제시
 - 서비스산업 부문별 국내외 경쟁력 평가 등을 토대로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 (구성)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 (제9조)

-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민간위원장

※ 민간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 (위원) 전체 30명 이내, 민간 위촉위원은 10명 이내

- 당연직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 위촉위원: 서비스산업 발전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원장이 위촉 (임기: 2년)

< 위원회 관련 입법례 >

내 용	소비자정책위원회	FTA국내대책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근거 법령	소비자기본법	FTA국내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통계법
구성	-위원장 공정위 위원장, 민간 -위원: 장관(11명), 민간(5명)	-위원장 재정부장관, 민간 -위원 장관(12명), 민간(14명)	-위원장: 재정부장관 -위원 장관(11명), 민간(7명)

- (의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심의·조정결과)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부처 등에 통보하고 관계 부처 등은 이를 시행계획 등에 반영 (제11조)

□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

- 위원회 안건의 사전심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관광, 의료 등 주요 분야별로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4] 서비스산업 규제·지원 관련 법령의 개선 권고 (제12조)

1. 필요성

- 교육·의료 등 핵심 분야의 경우 이해당사자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규제가 과도하여 서비스산업의 투자 및 경쟁을 저해
 -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제조업 분야에 많은 규제를 부과 ('08 OECD 한국경제보고서)
- 산업으로서의 인식 부족은 규제를 양산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규제 완화는 경쟁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
 - OECD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와 경쟁 환경 조성**을 제시('05년, OECD)
 -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가 전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업종 평균을 상회
 - * 서비스산업의 10% 규제완화는 전체 생산성을 0.19%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전 업종 평균의 1.4배('06.12, 일본 내각부 구조개혁평가보고서)

2. 주요내용

-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법의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시·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법령을 제·개정할 의무 부여

< 참고입법례 : 산업융합 촉진법 >

산업융합촉진법 제9조(융합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2.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제3장)

[1] 서비스산업 R&D 인증제 도입 등 활성화(제14·15조)

1. 필요성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미비로 서비스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제약

○ 서비스산업 R&D에 대한 개념 및 통계 미흡 등으로 중장기적인 서비스산업 R&D 투자 계획 수립에 한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 R&D 투자방향도 제조업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부 서비스업만 포함

* 例示: '12년 10대 중점 투자 분야(국과위):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제조

2. 주요내용

[1] 서비스산업 R&D 정의 (제14조 제1·2항)

○ 제조업·과학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문·사회 과학의 혁신적 활동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산업 R&D 개념을 정의

*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복합 등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 기술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문·사회·문화 등에서의 연구개발을 포함

[2] 서비스산업 R&D 활성화를 위한 시책수립 등 (제14조 제5·6항)

○ 서비스산업 R&D 관련 정책방향, 투자확대, 금융지원, 실태조사 등과 관련한 시책 수립

○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는 R&D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시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③ 서비스산업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 도입 (제15조 제1~2항)

- 서비스산업 분야의 R&D를 영위하는 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R&D 성과를 정부(기술표준원, 산업기술진흥협회 등)가 인증
 - 인증기업에 대한 자금, 세제, 구매 등의 지원을 통해 서비스 R&D성과에 대한 상용화 촉진, 민간의 R&D 투자 확대 유도

[2] 서비스산업의 표준화 활성화 (제16조)

1. 필요성

-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산업 고유의 표준화제도* 활성화가 필요

*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인력,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모범기준을 제정

- 제도 도입 초기*로 인한 인식부족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미흡 등으로 보급·활용이 아직까지는 미미

* 서비스 국가표준(KS) 제정('01년)과 인증제 도입('08년) / ** 결혼식장, 보육, 전시 등 39개 분야, 95종('11.6월)

2. 주요내용

- 서비스의 투명성·전문성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표준의 제정·보급을 활성화
 - 서비스 표준 제정을 활성화하고 산업계 및 관련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참고: 지원 강화 방안 예시 >

- ① 서비스기업의 표준화 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단계부터 표준 인증기업 지원 우대
- ② 용역 조달 등 정부사업 참여 시 표준 인증기업 우대 등 인센티브 마련

1. 필요성

- IT(정보통신)서비스 및 기술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IT서비스 및 기술 활용도는 일본의 1/2, 미국의 1/3 수준(하버드大 데일 조젠스 교수 연구결과, '10년)
 - 보건, 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의 IT서비스 및 기술 활용 장려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 특히, 중소 서비스기업의 경우 자금·인력 부족, IT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활용 미흡

2. 주요내용

- 서비스산업의 IT서비스 및 기술 활용을 촉진 위한 지원시책 마련
 -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 서비스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 및 기술을 개발·보급
 - IT표준 확산, 개인정보·저작권 보호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
 - * 例示)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표준 및 가이드라인 확산, 원격진료 시설·장비의 표준화 등
- 우수 IT서비스 및 기술 활용 사례를 선정하여 지원

3. 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제4장)

[11]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제18조)

1. 필요성

-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
 - 산업별 발전 정도, 성장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유망 서비스 업종 선정

2. 주요 내용

- ☐ 유망 서비스산업 선정 근거 마련
 - 부문별 국내외 경쟁력 평가 등을 토대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
 -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 수출 및 해외진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선정기준 마련
 -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선정된 부문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창업·수출지원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2] 창업,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의 지원 (제19·20·21조)

1. 필요성

□ 제조업·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에 따라 **재정·금융** 등의 지원제도가 서비스산업에는 불리하게 되어 있으며

○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

* 무역협회 연구(8.11)에 따르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제조업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는 비율은 44.7%이나 서비스업은 22.8% 불과

2. 주요 내용

□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위해 **창업·세제·금융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창업) 서비스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19조)

○ (세제) 조특법, 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0조)

○ (해외진출) 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 협력체계의 구축, 국제 공동 서비스 R&D 지원** 등의 지원 근거 마련(제21조)

□ 재정·금융 등 지원제도에 있어서 제조업 등과 비교해 서비스산업의 **차별적인 요소를 지속 발굴**(제20조 제3항)

○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

[3]

서비스산업 특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제22조)

1. 필요성

- 우리 경제가 서비스화되면서 ‘사람’이 관건인 서비스 산업의 인적자본 육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
- 우리나라 서비스 인력의 공급은 양적인 부족 보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 기능 인력이 부족

< 사례 : 디자인 산업의 인력 현황 >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 연간 디자이너 배출 인원 : 세계 2위 (미국 3.8, 한국 3.6만명) - 전문 디자인 기업수 : 2,245개	- 국가 디자인 경쟁력 순위 : 세계 14위 (World Economic Forum) - 세계 100대 디자인 기업 : 0개

2. 주요내용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비스산업에 맞는 특성화 교육 기관 육성
-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추진(제22조 1항)
-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단체,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 기관을 지정·지원(제22조 2~4항)

< 참고입법례 :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 대학 지정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4] 실태조사 (제23조)

1. 필요성

- ☐ 기본계획의 수립,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전망 수립 등을 위하여 주요 서비스 산업에 대한 통계 DB 구축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 필요

* 정책수립시 필요한 해외, 재정관련 주요 통계가 미흡한 상황

2. 주요내용

- ☐ 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및 분석을 위한 근거 마련
 - 서비스산업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실시, 관계 중항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요청 근거 규정

[5]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개선 (제26조)

1. 필요성

- ☐ 우리 경제가 제조업 위주로 성장하여 “서비스”에 대한 “산업(Business)”적인 인식 부족
 -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에 제조업 중심 인식 등을 개선하는데 한계

2. 주요내용

- ☐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우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정보통신 활용 등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1. 필요성

-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과 선진화 전략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 미흡**

* 일본의 국책연구기관인 AIST(산업 기술종합연구소)는 서비스 혁신 센터를 산하에 설치('08.4, 4개팀, 65명)하여 서비스 혁신을 연구

-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실태조사·통계DB 구축 등 정책적 자료 축적 미비**

2. 주요내용

- 서비스산업 **전문 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등을 도모

- (기능)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수립시 필요한 조사 연구
-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동향 조사와 주요 국가의 정부 지원 정책 등 연구
 - 업종별 경쟁력 평가와 국제 비교를 통한 유망 서비스산업 발굴
 - 서비스산업 관련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 DB 구축
 -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정부정책 과제 제시
- (지원) 지정기관에 대한 **연구기관의 연구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연구센터 관련 입법례>

구분	법	내용
지정	물류정책기본법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 지정
	산업융합촉진법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
설치	식품산업 진흥법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1. 필요성

□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필요

○ 제조업 및 건설업 등과 달리 서비스산업 업계 전체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책방향을 건의하는 채널 미흡

-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전경련,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등 업종별 협회를 통해 업계·시장의 의견을 대변

2. 주요내용

□ 서비스산업 관련 법인·조합·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연합회에 대한 설립·활동 지원

○ (기능)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사업, 홍보, 기술 보급, 사업자 교육 지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등을 수행

○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 및 지원